

#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조례안 제6조의2 신설

-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조, 제23조 반영

### ○ 조례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의 하한 규정 반영(9명 이내 ⇒ 5명 이상 9명 이내)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제4항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연임 규정 삭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##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)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“특구”라 한다)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[별표 7]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중 “9명”을 “5명 이상 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“위원장 또는 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7]

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 광고물 표시방법(제6조의2 관련)

광고물 설치 방법			
주소	종류	수량	규격 (가로×세로×높이)
대관령면 유천리 (영동고속도로)	지주이용간판	1	20×10×25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의2(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)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“특구”라 한다)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[별표 7]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</p>
<p>제12조(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</p>	<p>제12조(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----- ----- ---5명 이상 9명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한 다. ----- ----- -----</p>

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(職)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~ ⑧ (생략)

⑨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.

2. ~ 4. (생략)

⑩ (생략)

-----  
---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위원장-----  
-----.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⑩ (현행과 같음)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성 자	도시주택과 김 찬 수
연 락 처	(033)330-2470

# 관계 법령

## □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"특구"라 한다)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② 생략

제23조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(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종류·모양·크기·색깔·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 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제7조(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) ① 생략

3.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제32조(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생략

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(職)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~ ⑩ 생략